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8일, 박희승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2. 20.)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1.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 11.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희승의원)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지역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월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70%는 월 60만원 미만(2024년 1월말 기준)의 노령연금액을 수급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2023년도 기준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6.1%로 약 절반에 달하는데, 이들의 실제 월 소득은 286만원에서 386만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노령연금액 지급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다보장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령연금액 감액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온전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활동 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완화하고자 함.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만 노령연금액이 감액되도록 소득활동 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완화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여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60대가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활동 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완화는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사업·근로소득월액이 전체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노령연금액을 감액·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종류의 종합소득과의 형평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 제도의 완화는 주로 고소득자의 수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점 등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등 각 직역연금에서도 퇴직·퇴역연금 등 수급권자의 사업·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급여액 일부를 감액하고 있어 공적연금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노령연금액 일부가 감액되더라도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로

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인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제422회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2. 20.)

(소위원장 김미애)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1. 19.)

(소위원장 이수진)

생 략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